- 공부상 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다른 토지의 보상

○○○가 공부상 지목은 "전"이나 "공장용지"로. ◇◇◇가 공부상 지목은 "전"이나 현실이용상황인 "대"로, ○○○이 공부상 지목은 "전"이나 현실이용상황인 "대"와 "목장용지"로 평가ㆍ보상하여 달 라는 주장에 대하여. 법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 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.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,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[건축법]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또는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 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 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, 법 시행규칙(건설교통 부령 제344호, 2002. 12. 31.) 부칙 제5조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 하여는 제24조·제54조제1항 단서·제54조제2항 단서·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 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되어 있다. 관계 자료(항공사진, 현황측량도면, 건축물대장, 감정평가서,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)를 검토한 결과, ○○○의 경기 △△리 111 전 2.508㎡는 공부상 지목 및 현실이용상황이 "전"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. ○○○의 같은 리 112 전 545㎡ 중 190㎡는 1989. 1. 24.이전부터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, 이를 "대"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인의 주장은 이유없다. ○○○의 같은 리 113 전 621㎡ 중 262㎡는 1989. 1. 24.이전부터 주택부

지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"대"로 평가・보상하기로 한다. ○○○의 같은 리 112 전 4.645㎡ 중 406㎡는 적법한 건축물 3동의 축사부지로 확인되므로 "목장용지"로 평가・보상하기로 한다.